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 6월 21 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 도시환경국 소관(일반회계, 특별회계)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3일(月),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 2013년 6월 7일(金)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법률 제11690호, 2013.3.23]
- 「지방재정법」 제51조 [법률 제11690호, 2013.3.2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법률 제11690호, 2013.3.23]

5.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 1,909,108,670원

1)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 비율 (%)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예 비 비					
계	7,663,104,000	1,050,000,000	859,108,670	-	9,572,212,670	8,560,709,371	114,987,000	296,516,299	3.1
주택과	237,195,000	-	-	-	237,195,000	199,775,820	-	37,419,180	15.8
도시 계획과	324,395,000	-	245,340,000	-	569,735,000	355,210,730	114,987,000	99,537,270	17.5
도시 경관과	334,628,000	-	-	-	334,628,000	305,082,960	-	29,545,040	8.8
건축과	228,792,000	-	-	-	228,792,000	212,091,300	-	16,700,700	7.3
환경과	1,194,132,000	-	-	-	1,194,132,000	1,164,588,467	-	29,543,533	2.5
공공 복지과	5,343,962,000	1,050,000,000	613,768,670	-	7,007,730,670	6,323,960,094	-	83,770,576	1.2

(1) 개요

- 예산액 : 76억 6,310만 4,000원 [예산현액 : 95억 7,221만 2,670원]
- 지출액 : 85억 6,070만 9,371원
- 이월액 : 1억 1,498만 7,000원
- 집행잔액 : 2억 9,651만 6,299원 - 불용율 3.1%(전년도 12.2%)
(마포구 일반회계 2012년 불용비율 6.3%)

(2)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 명시이월 (1건) : 9,000만원

▶ 도시계획과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비) - 9,000만원

서울시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완료 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명시 이월됨

○ 사고이월 (2건) : 2,498만 7천원

- ▶ 도시계획과 :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비) - 1,356만 5천원
 영리4구역 실태조사 용역기간이 2012.12.20-2013.7월경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 이월됨
- ▶ 도시계획과 :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부대비) - 11,422,000원
 2013. 7월경 영리4구역 실태조사 용역수행기간 중 지출 할 경비로 용
 역기간 미도래로 사고 이월됨

2)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원)

구 분	계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 잔액
계	896,516,299	89,399,770	147,517,600	446,779,747	212,819,182
주 택 과	37,419,180	-	10,429,000	24,574,330	2,415,850
도시계획과	99,537,270	83,300,000	2,603,000	9,887,270	3,747,000
도시경관과	29,545,040	-	4,887,000	24,658,040	-
건 축 과	16,700,700	-	7,723,000	8,977,700	-
환 경 과	29,543,533	6,099,770	3,909,000	19,269,834	264,929
공원녹지과	683,770,576	-	117,966,600	359,412,573	206,391,403

□ 집행 잔액 사유별 구분

○ 집행 잔액 : 8억 9,651만 6,299원 - 불용율 3.1%

-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 8,939만 9,770원 - 불용비율 10.0%
- ▶ 예산절감(유보액) : 1억 4,751만 7,600원 - 불용비율 16.5%
-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등) : 4억 4,677만 9,747원 - 불용비율 49.8%
- ▶ 보조금 집행 잔액 : 2억 1,281만 9,182원 - 불용비율 23.7%

3) 집행 잔액 발생 주요사업 현황

(단위: 원)

부서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2013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비율 (%)
주택과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18,250,000	12,377,900	-	5,872,100	32.2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사무관리비)	9,993,000	2,991,020		7,001,980	70.1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사 무관리비)	8,000,000	5,685,600		2,314,400	28.9
	공동주택안전점검(사무관리비)	10,842,000	8,340,000		2,502,000	23.1
	공동주택 안전점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160,000	8,630,550		1,529,450	15.1
	공공관리활성화(사무관리비)	1,000,000	0		1,000,000	100
	기본경비(사무관리비)	57,408,000	55,955,520		1,452,480	2.5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사무 관리비)	19,482,000	15,710,000	-	3,772,000	19.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4,851,000	1,564,200	-	3,286,800	67.8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용역 (시설비)	60,400,000	0	-	60,400,000	100.0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시설비)	96,000,000	11,103,942	90,000,000	6,000,000	6.3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시설비)	30,877,000	13,565,000	13,565,000	3,747,000	12.1
	기본경비(사무관리비)	50,307,000	45,991,700		4,315,300	8.6
도시 경관과	불법건축물발생예방 및 정비 (공공운영비)	5,637,000	3,634,850	-	2,002,150	35.5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행 사운영비)	10,000,000	8,910,000	-	1,090,000	10.9
	불법광고물 정비(사무관리비)	15,022,000	11,515,590	-	3,506,410	23.3
	기본경비(사무관리비)	60,435,000	53,672,440		6,762,560	11.2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화운영(사무관리비)	14,741,000	11,200,000	-	3,541,000	24.0
	공공시설공사설계용역및공사 관리(공공운영비)	1,100,000	0	-	1,100,000	100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사무관리비)	52,925,000	50,716,800	-	2,208,200	4.2
	기본경비(사무관리비)	53,648,000	47,038,150		6,609,850	12.3
	기본경비(국내여비)	80,640,000	77,920,000		2,720,000	3.4

부 서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2013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비율 (%)
환경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공공 운영비)	14,292,000	12,205,360	-	2,086,640	14.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12,320,000	10,018,840	-	2,301,160	18.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66,144,000	60,290,660	-	5,853,340	8.8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사회 보장적 수혜금)	44,409,000	41,609,230	-	2,799,770	6.3
공 원 과 녹 지 과	시소유공원 관리(공공운영비)	34,135,000	27,177,170	-	6,957,830	20.4
	공원시설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9,956,000	430,072,780	-	9,883,220	2.2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3,145,000	23,757,630	-	9,387,370	28.3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9,954,000	37,310,300	-	2,643,700	6.6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0,277,000	164,823,480	-	5,453,520	3.2
	어린이공원 구조 변경 및 공원 화장실 개선(시설비)	328,000,000	281,756,680	-	46,243,320	14.1
	수목식재 사후관리(기간제근 로자등 보수)	158,438,000	150,810,950	-	7,627,950	4.8
	수목식재 사후관리(재료비)	253,938,000	247,262,980	-	6,675,020	2.6
	생활주변 녹지 확충(기간제근 로자등 보수)	135,805,000	129,141,480	-	6,663,520	4.9
	건강한 녹지도시 환경(시설비)	1,147,581,000	1,093,451,220	-	54,129,780	4.7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0,954,000	76,509,080	-	24,444,920	24.2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재료비)	27,110,000	16,302,450	-	10,807,550	39.9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시설비)	405,200,000	341,685,900	-	63,514,100	15.7
	산림보호 강화(재료비)	26,550,000	23,138,580	-	3,411,420	12.8
	산림보호 강화(시설비)	50,000,000	43,110,000	-	6,890,000	13.8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	56,000,000	48,609,700	-	7,390,300	13.2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4,596,000	127,971,130	-	16,624,870	11.5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7,222,000	23,932,070	-	3,289,930	12.1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14,720,000	11,492,400	-	3,227,600	21.9

부 서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2013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공 독 지 과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시설비)	1,232,300,000	1,022,283,980	-	210,016,020	17.0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시설부대비)	6,356,000	2,220,000	-	4,136,000	65.1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8,655,000	472,820,420	-	35,834,580	7.0
	내부거래지출(공사·공단정상잔출금)	116,075,000	93,492,344	-	22,582,656	19.5
	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금)	13,094,000	10,768,600	-	2,325,400	17.8

4)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주요사업 현황 (단위: 원)

부 서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2013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 9,000만원						
도 시 계 획 과	합정재정비축진 지구 개발사업 (시설비)	96,000,000		90,000,000	6,000,000	서울시와 매칭 펀드 방식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완료 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명시 이월함
사고이월 : 2,498만 7천원						
도 시 계 획 과	아현재정비축진 지구 개발사업 (시설비)	30,877,000	13,565,000	13,565,000	3,747,000	용역기간이 2012.12.20-2013.6.16로 용역기간 미도래
	아현재정비축진 지구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1,422,000	0	11,422,000	0	용역기간이 2012.12.20-2013.6.16로 용역 수행 기간 중에 지출 할 경비임

6)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비 고
도시계획과	77,420,000	77,420,000	16,629,606	-	60,790,394	21C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7)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조성액	사용액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과)	575,372,166	203,046,982	378,855,152	175,808,170	778,419,148	옥외광고물 사업 등 정기예금 : 695,000,000원, 공공예금 : 83,419,148원

6. 검토의견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 포함)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156만 6천원 포함 118억 4,502만 8천원으로 이
중 약 71.7%인 84억 8,770만 2,498원이 지출되었고, 19억 910만 8,67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09%에 해당하는 2억 9,651만 6,299원으로
2011회계연도 불용비율 12.2%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 2012회계연도에도 불용금액 및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주택과

-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사무관리비) - 5,872,100원 : 32.2%
-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사무관리비) - 7,001,980원 : 70.1%
-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사무관리비) - 2,314,400원 : 28.9%
- 공동주택안전점검(사무관리비) - 2,502,000원 : 23.1%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사무관리비) - 3,772,000원 : 19.4%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사무관리비) - 3,286,800원 : 67.8%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용역(시설비) - 60,400,000원 : 100%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비) - 6,000,000원 : 6.3%
-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비) - 3,747,000원 : 12.1%

▶ 도시경관과

- 불법건축물발생예방 및 정비(공공운영비) - 2,002,150원 : 35.5%
- 불법광고물정비(공공운영비) - 1,964,090원 : 13.6%

▶ 건축과

- 건축심의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 - 3,541,000원 : 24.0%
- 공공시설공사설계용역및공사관리(공공운영비) - 1,100,000원 : 100%
-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사무관리비) - 2,208,200원 : 4.2%

▶ 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공공운영비) - 5,853,340원 : 8.8%
-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사회보장적 수혜금) - 2,799,770원 : 6.3%

▶ 공원녹지과

- 시소유공원 관리(공공운영비) - 6,957,830원 : 20.4%
-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공공운영비) - 9,387,370원 : 28.3%
-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24,444,920원 : 24.2%
-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재료비) - 10,807,550원 : 39.9%
-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시설비) - 63,514,100원 : 15.7%
-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6,624,870원 : 11.5%
-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재료비) - 3,227,600원 : 21.9%
- 내부거래지출(공사·공단경상전출금) - 22,582,656원 : 17.8%

○ 2012회계연도 주요 불용내역 세부내용은 3 ~ 5쪽의 집행 잔액 발생 주요사업 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도시환경국의 경우 예산 성립 후에 증감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 10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사유로, 도시계획과 2억 4,534만원과 공원녹지과 6억 1,376만 8,670원이 사고이월 사유로 총계 19억 910만 8,670원이 증가하였음

○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 불용비율 12.2%에 비해 2012회계연도 불용비율은 3.1%로 불용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단위사업별로도 20%이상 불용비율을 보면, 2011회계연도 22건에서 2012회계연도 16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 일부 불용액 사유 및 개선해야 할 사항

주 택 과

1)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사무관리비) - 587만 2,100원

우리 구 관내에는 153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은 (1) 공동주택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시 각종 공사비 2억 이상, 용역비 1억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 공동주택 자문단 전문가(현재 14명)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12년도 4개 단지의 자문을 받아 예산현액 600만원 중 40만원을 자문료로 지출하여 자문 상담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2013년부터는 공동주택 전문가 의뢰 자문대상 공사비가 1억 이상, 용역비가 5천만 원 이상으로 자문대상 사업규모가 완화된 여 자문의뢰 건수가 늘어나 집행 잔액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2)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의무관리 대상(단지 150세대 이상) 7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1천만원이내의 1개사업(초과분은 자체부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마포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각 단지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공동주택 지원 사업대상을 정하여 신청서를 구(區)에 신청하여 심의결과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2011년도 2회/ 2건에 이어, 2013년도 6월 현재 1회/ 1건으로 공모사업 신청 또한 실적이 역시 저조한 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직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필요한 사업과 신청대상 가능 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상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상담가 1명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단지내 부녀회 등을 순회하면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 타당성 상담 및 신청 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 상담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2)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사무관리비) - 700만 1,980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주민들 사이 주택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라짐에 따라 신청 건수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서울시 최초로 종로·송의 뉴타운지구 전면 해제로 우리 구에서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은 사업지구에서 제외되기만 하면 그 동안 사업비 전부를 매몰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들어간 공식적인 비용만 매몰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업추진 찬성자와 반대자간에 갈등 및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더 이상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도 시 계 획 과

1)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시설비) - 6천 40만원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서교동 일대, 면적 : 746,994㎡)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향후 추진 할 양화로변 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양화로변 일대, 면적 : 130,000㎡)의 재정비 용역을 통합추진 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의 정합성(整合性) 유지 및 용역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사업비는 2009년도 예산 2억 5,520만원 및 마포지구 (부분)재정비 용역비 6천 40만원 (설계변경)을 포함한 총 사업예산 3억 1,560만원 중 2011년도 2억 5,520만원을 최종 지급하고 사업지연에 따라 잔여금 6천 40만원을 2011년도 예산 사고이월 후 2012년도에 사업이 추진된 바 없어 불용처리 후 2013년도 계속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불용처리 금액 6천 40만원을 2013년도에 재배정함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비) - 6백만원

양화로, 합정로 및 주간선도로변 면적 298,000㎡에 대한 블록단위의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이중 역세권 중심의 복합시설을 배치하고, 망원동 역세권을 생활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도 완화 및 규모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판매·업무 용도의 도입으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 - 9천만원

본 사업은 서울시와 마포구가 50:50으로 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는 용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후 시비(市費)를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9천만 원을 명시 이월함

나. 합정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수립 - 6백만원

본 사업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전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사내용이 중복되어 6백만 원이 불용 처리됨

4) 기반시설부담금 - 6,079만 394원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도로, 공원,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2012년도 마포구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은 2억 411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30/100의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현액 7,74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12.30. 서울시마포구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 1,662만 9,606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잔액 6,079만 394원이 남았으나, 사실상 대법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가 위법하다는 위헌 판결 이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없으며, 우리 구도 2012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납부실적은 전혀 없어, 2013년도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세입·세출 예산과목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도 시 경 관 과

1) 불법건축물발생예방 및 정비(공공운영비) - 2백만 2,150원

마포구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주민홍보와 위법발생 가능한 건축물의 사전 현장 지도단속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한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단속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 및 부과금액이 매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부과건수건축 인·허가 건수(신축) 현황

연도	적발건수	부과건수	부과금액	3년차
2010년	898건	1,621건	1,947,002천원	5,000
2011년	538건	1,947건	2,271,234천원	7,748
2012년	750건	2,302건	2,661,400천원	2,748

○ 불법건축물발생예방 및 정비(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백만 2,150원은

- ① 압류촉탁 및 해제 증지구입이 500건 예상했으나 납부 미납으로 압류

해제건수가 300건으로 증지구입비 1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 구매하여 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음

② 자동차 년식이 오래되어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인하되어 20만 3,4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음

③ 이륜차보험료 : 납부실적이 없어 24만원이 남음

④ 차량선박비 및 유지비 : 95만 8,7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음

2) 불법광고물 정비(공공운영비) - 196만 4,090원

마포구 관내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은 2012년 불법옥외광고물 우선정비 지구(서교동 사거리 ~ 양화대교 북단) 미허가 간판 184개와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신촌역 5번 출구 ~ 이대역 사거리) 구간을 연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및 휴일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연속성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등을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 고정광고물

구 분	이행강제금 부과			
	부 과 실 적		징 수 실 적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2012년	125	105,180	83	70,720
2011년	62	42,660	58	39,410
2010년	55	38,678	52	37,358

▶ 유동광고물

구 분	과태료 부과			
	부 과 실 적		징 수 실 적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2012년	701	191,409	485	106,775
2011년	454	111,602	387	83,266
2010년	744	127,040	488	70,374

건축과

1)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사무관리비 - 220만 8,200원

건축 관련 진정서 처리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특별검사원이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최근 건축경기의 하향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줄어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지급되던 특별검사원 수당 지급액이 줄어들었고, 건축법령집 및 건축신고대장을 일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220만 8,200원이 남음

○ 건축 인·허가 건수(신축) 현황 (단위 : 건)

소계	년도	2011년	2012년	2012년
	876		277	324

※ 특별검사원 수당 : 신축 건물 중 2,000㎡ 이하 건물의 현장조사 후 수당 지급

○ 특별검사원 수당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27건	174,201	210건	49,140	264건	59,942	253	65,119

○ 건축법령집 구매 (5권) 및 건축신고대장 인쇄(일괄구매) : 133만 5,800원

환경과

1)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회보장적 수혜금) - 279만 9,770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자 석면피해 구제법(제6조~ 제12조)에 따른 석면피해보상 급여 4,440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여 7건에 4,160만 9천을 지급하고 추가 석면피해보상 급여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구비 분담금 279만 9,77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음

※ 총사업비 : 환경부기금(90%) + 서울시비(7%) + 구비(3%)

마포구 관내에는 아직도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음에 유의하여,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 향후 석면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 피해 조사 및 피해 대상자 조사가 신속히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석면 피해자 건강검진 및 피해자 판정과 보상금 지급 등 석면 피해자 관리를 환경부와 마포구에서 일원화하여 신속한 석면 피해자 판정 및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석면 피해자 건강검진 판정 및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금의 90%를 환경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제 주관부서인 환경부에서 사업을 일원화하여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 원)

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7명	159,405,030	4명	36,870,500	6명	56,691,840	7명	65,842,690

공 원 녹 지 과

1) 건강한 녹지도시 환경(시설비) - 5,412만 9,780원

도심 공공건물 및 아파트 등의 담장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녹지율을 높이고, 쾌적한 가로변 녹지량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액 180만 5천원, 낙찰잔액 5,232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음

가. 사업명 : 아파트열린녹지조성사업

아파트의 담장을 철거한 후 열린 녹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도심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생태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위 치 : 망원동 470-39번지 삼화아파트(담장철거 40m, 녹지조성 200㎡)
- 기 간 : 2012. 1월 ~ 2012. 12월
- 잔액사유 : 예산액 80,346천원, 집행 : 67,941천원 잔액 : 12,414천원

나. 동네숲 조성

망원1동에 동네 숲을 조성하고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수목과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동네 숲을 가꾸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녹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함

- 위 치 : · 망원동 227-2번지 (815㎡)
- 기 간 : 2012. 2월 ~ 2012. 12월
- 잔액사유 : 예산 : 22,000천원 집행 : 21,269천원 잔액 : 731천원

다. 만리배수지 공원 조성

아현동 만리배수지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주민의 여가 활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부에는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산책로를 조성하고 운동기구, 벤치 등 설치하고 사면에는 기존 수림과 어우러진 산책로, 건강 숲을 조성함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87-7일대(만리배수지 상부 / 9,713㎡)
- 기 간 : 2012. 3. 16 ~ 2012. 9. 25
- 잔액사유 : 예산 : 1,045,235천원 집행 : 1,004,251천원

낙찰잔액, 심사절감액 : 40,985천원

2)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시설비)

가로수의 수형을 조절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에 기여하고 도로안전 시설이나 전기, 통신시설에 저촉되는 가로수를 정비하여 사고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체육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이나 산비탈 등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 및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2012년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 : 1건

2012년 6월 22일 기간제근로자가 가로수 및 띠녹지 급수작업 중 가로수에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함

가.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2,444만 4,920원

○ Adopt-a-Tree제도를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수목관리를 지역 어르신에게 맡겨 관리하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비로 인건비를 지출하여 예산을 절감함

- 참여인원 : 52명(만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대 상 지 : 양화로 (연장 2.6km, 띠녹지 1,500㎡)
- 주요수목 : 가로수 - 은행나무 등 2종 284주,
띠녹지 - 회양목 등 6종 19,560주

나.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재료비) - 1,080만 7,550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비료, 물품 등의 구매는 구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비를 우선 사용함

- 잔액사유 : 예산절감 : 231만 1천원, 낙찰차액 : 105만 6천원,
집행잔액 : 744만 1천원

다.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시설비) - 6,351만 4,100원

○ 잔액사유(예산집행 현황)

- 외과수술<예산:10,000, 집행:8,330, 잔액:1,670>
- 관리사업(연간단가)<예산:200,000, 집행:175,359, 잔액:24,641>
- 보식공사<예산:50,000, 집행:42,710, 잔액:7,290>
- 띠녹지조성<예산:22,000, 집행:19,240, 잔액:2,760>
- 여름철가로수가지치기<예산22,000, 집행:19,217, 잔액:2,783>
- 겨울철가로수가지치기<예산101,200, 집행:85,160, 잔액:16,040>
- 예산절감(유보액) 14,100천원
- 낙찰차액 48,414천원
- 집행 잔액 1,001천원 (보험료정산금)

3)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 2억 1,001만 6,020원(종전 부서)

관내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재배치외 3개소)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약심사 절감액 발생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잔액 발생함

○ 잔액사유 : 예산 : 12억 3,230만원, 집행 : 10억 2,228만 3천원

낙찰차액 : 6,801만원, 심사절감액 : 7,576만 9천원, 집행잔액 : 6,623만 8천원,

4)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2,258만 2,656원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망원 배드민턴장(면수 : 5면) 및 와우산 배드민턴장(면수 : 9면)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인건비 및 유지보수 비용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함

○ 잔액사유 : 예산 : 1억 1,607만 5천원, 집행 : 9,349만 2,344원,

집행잔액 : 2,258만 2,656원

○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집행잔액은 항상 매년 동일한 예산과목에서 유사한 사례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 못되어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거나 사업추진이 실제 계획보다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사업에서 기상악화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당초부터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 초기부터 집행 시 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명시이월은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되는 금액으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구의회 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았지만 해당 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재사고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및 계획 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주요사업

○ 명시이월 (1건) : 9,000만원

▶ 도시계획과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비) - 9,000만원

본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서울시에 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후 시비를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 이월함

○ 사고이월 (2건) : 2,498만 7천원

▶ 도시계획과 :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비) - 1,356만 5천원

영리4구역 실태조사 용역 선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용역기간 (2012.12.20 ~ 2013.7월경)이 완료 시 지급을 위하여 사고 이월함

▶ 도시계획과 :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시설부대비) - 1,142만 2천원

영리4구역 실태조사 부대비(주민 통보자료 등기우편 발송비용 등)로 용역 기간(2012.12.20 ~ 2013.7월경) 완료 시 지급을 위하여 사고 이월함

□ 예비비 지출사업 : “해당 없음”

□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 도시계획과 : 21C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 3,153만 5천원

2012회계연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7,742만원 중 21.4%인 1,662만 9,606원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도 징수 교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미교부된 집행 잔액 6,079만 394원이 남았음

□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현황

▶ 도시경관과 : 월드컵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등 - 2012년도 총 조성금액은 7억 7,841만 9,148원이며,

2011년도 이월된 5억 7,537만 2,166원의 기금과 2012년도에 새로 조성된 3억 7,885만 5,152원의 기금이 증액, 1억 7,580만 170원이 지출되어 2억 304만 7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